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0

발의연월일: 2020. 12. 22.

발 의 자: 송재호·양정숙·남인순

김영호・맹성규・서영교

이워택 • 이성만 • 김용민

김한정 의원(10인)

제안이유

옵티머스, 라임, 젠투펀드까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연이어 발생한 환매중단 사태는 단순히 투자방식의 부실과 운영진의 부도덕함, 불완전 판매를 묻는 것으로는 접근의 폭이 작음. 이는 집합투자업자(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할 때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업자 즉, 운용사의 체질 개선과 함께 운용사의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운용사의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견제 방안을 마련해 사모펀드 시장의 개선을 이끌고, 환매중단과 같은 또다른 피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현행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에 기관투자자는 포함되지 않음. 기관투자자는 편

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검사 능력이 있어 운용사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하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범위를 개편해 현행 틀의 변화는 없이 투자자 수를 조정하고자 함.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 자기자본의 최소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투자자의 손해 배상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할 책임은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사모사채·메자닌·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의 환매 요구 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에 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기상황별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집합 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시장성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방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신탁업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조치 명령권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능력과자질이 부족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 등 투자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탁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 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신탁업자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를 100인 이하로 하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함.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9항).
- 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2조제3항).

- 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집합투자재산 가액 중 시가를 평가할 수 없거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함(안 제249조의6제5항 신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손해배 상 재원 등을 포함한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 록 함(안 제249조의7제5항 신설).
- 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 성 위험 등에 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 7제6항 신설 등).
- 바. 금융위원회가 투자회사등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제102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 하는지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2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등).
- 사.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0조제3호의2 신설).
- 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9조제3항제9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를 "투자자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100인 이하이고, 일반투자자의 총수는 49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제102조의 제목 중 "충실의무"를 "충실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88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제249조의6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 다.

-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 합투자기구를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 립하여야 한다.
- 1. 제24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 2. 총 집합투자재산 가액 중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제249조의7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 6항"으로, "그 밖에"를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 기준, 위기상황분석의 방법과 실시주기, 그 밖에"로 한다.

-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소영업자본액" 이라 한다)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제24 9조의3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 인 자기자본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자본
- 3. 고유재산의 투자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
-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 성 위험 등에 관한 분석(이하 이 조에서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2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등"을 각각 "투자회사등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2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2의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관한 사항

제4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9조의7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49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9항, 제249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설립되는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자본 유지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 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유지 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⑧ (생 략) ~ (18) (현행과 같음) ⑪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 │ 구"라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 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투자자의-----100인 이하 이고. 일반투자자의 총수는 49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후단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신설>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 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0 ~ 29 (생 략) 20 ~ 29 (현행과 같음)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 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신탁업자는 제188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 고)① ~ ④ (생 략) 고)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를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
- 1. 제24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여야 한다.

2. 총 집합투자재산 가액 중 시 가를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 는 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가액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1 12 1 10 0 0 0 0 0 0
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u>⑥</u> <u>제5항</u>

의 비육이 대통령령으로 정

-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 유)
 -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 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 서 "최소영업자본액"이라 한다)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 따 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요건(제249조의3제8항에 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 화된 요건을 말한다)인 자기 자본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

<신 설>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자 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자본

- 3. 고유재산의 투자과정에서 시 장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 한 자본
-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 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 자회사등은 전문투자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위기상황 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등에 관한 분석(이하 이 조에서 "위 기상황분석"이라 한다)을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u>(7)</u>	<u>제(</u>	<u> </u>	
최걸	소영업자본액의	산정	기준

령으로 정한다.

제252조(<u>투자회사등</u>에 대한 감독 ·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 ·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u>투자회</u> 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u><신 설></u>

<신 설>

- 3. (생략)
- ② (생략)
-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 저 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

위기상황분석의 방법과 실시주
<u>기, 그 밖에</u>
제252조(<u>투자회사등과 신탁업자,</u>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u>자</u> 에 대한 감독·검사) ①
투자회사등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u> 자</u>
1.•2. (현행과 같음)
<u>2</u> 의2. 제102조제3항에 따른 기
준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2의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
최) ①

는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 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 9. (생략)

② • ③ (생 략)

제449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신 설>
- 10. ~ 19. (생 략)
- ④ (생략)

<u>.</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49조의7제5항에 따른</u>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u>경우</u>
4. ~ 9.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 1. ~ 9. (현행과 같음)
- 9의2.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 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 지 아니한 자
- 10. ~ 19.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